

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소방장비관리법」 제14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"신청기관"이란 「소방장비관리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(이하 "인증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신청서류의 접수) ① 소방청장은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(이하 "신청서류"라 한다)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.

1. 신청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
2. 신청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

③ 신청기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신청기관이 신청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신청서류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.

- 제4조(심사반의 구성)** ① 소방청장은 신청기관이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.
- ② 심사반은 심사반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되, 심사반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한다.
- ③ 소방청장은 심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제5조(심사계획서의 통보) 소방청장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계획서를 서류심사일의 전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.

1. 심사대상 기관
2. 심사 일정 및 장소
3. 심사 절차
4. 인증대상 소방장비
5. 평가 항목

제6조(인증기관 지정심사) ① 심사반은 제5조의 심사계획서에 따라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실시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.

1. 신청기관이 희망(希望)하는 경우
2.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
3.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

② 심사반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발행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요청 횟수는 심사별 2회로 한정한다.

제7조(서류심사) ① 심사반은 신청서류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다.

1.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의 적합 여부
2.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여부

② 심사반은 서류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심사반은 제2항의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
제8조(현장심사) ① 심사반은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심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심사를 실시한다. 이 경우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사항을 함께 심사할 수 있다.

② 심사반은 현장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심사반은 제2항의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5조에 따른 심사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은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현장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
제9조(심사결과의 보고) 심사반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심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심사결과의 통보) ① 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.

1.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 기간
2.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보완 기간
3.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의 보완 기간

② 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심사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재검토기한) 소방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

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보완요청서

발행날짜 (번호)	년 월 일 ()	해당기관	
발행구분	☐ 서류심사 ☐ 현장심사		
관련문서			
보완 요청사항 등	※ 부적합사항, 보완 요청사항, 발생 문제점 또는 현상을 간명하게 기재		
보완 기한	년 월 일		
발 행 자	년 월 일	(평가위원) 성명:	(서명)
보완 결과	※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, 원인조사 결과, 재발방지 대책 실시 결과 등을 기재		
작 성 자	년 월 일	직책:	성명: (서명)
보완 결과 확인	☐ 만족 ☐ 불만족(재보완 요구 :)		
확 인 자	년 월 일	(평가위원) 성명:	(서명)

3. 신청자 동의

이 보고서는 「소방장비관리법령」 및 「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」에 의한 심사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, 신청자는 이 심사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.

기 관 명 :

대표자 :

(서명)

[첨부 1] 지정기준 점검표

평가항목	결 과
1. 시험 · 검사기관 (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)	
1.1 제품, 장비 등의 시험 또는 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	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2. 인정기구의 인정 (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 · 검사기관일 것)	
2.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 · 검사기관일 것	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3. 시험 · 검사설비의 보유 및 관리 (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설비의 보유 및 적정하게 관리될 것)	
3.1 소방장비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·검사 장비를 보유할 것 ①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「별표 5」의 시험설비기준의 100분의 80 이상 보유할 것	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3.2 교정대상 시험·검사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①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교정주기마다 교정검사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를 받아 관리되고 있을 것 ② 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넘지 않을 것 ③ ①, ②외의 장비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할 것	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
4. 전문인력 보유(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것)

4.1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

-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
-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·검사기관에서 시험·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 -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
- ② 인증업무 수행 부서에 근무할 것

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
5. 재정(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인증 활동의 독립성이 유지될 것)

5.1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,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

- ① 신용평가등급, 자본금,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인증업무를 독립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
- ②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에 대한 방침 유무

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
[첨부 2] 사업계획서, 인증업무규정 등 점검표

평가항목	결과
1. 정관/규약(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)	
1.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은 적정한가? ① 소방장비 인증업무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	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2. 사업계획서(소방장비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)	
2.1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취지, 목적, 제도의 특성 등을 기록(이해)하고 있는가?	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2.2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범위는 적정한가? ① 신청한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 수행 능력이 있을 것 ② 소방장비 인증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인증현황 확인	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2.3 소방장비 인증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시험장비 사용이 가능한가? ① 인증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시험설비를 기준으로 기본규격 의 시험 항목 등을 작성 ② ①의 기재사항 외에 인증기관에서 보유한 시험설비를 기준으로 기본규격 의 시험 항목을 작성	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2.4 소방장비 인증업무에 관한 조직구조가 수립되고 준비되어 있는가? ① 조직구조(조직도 및 업무분장)에 소방장비 인증관련 인원의 역할, 책임 및 권한을 기록 ② 인증관련 부서와 위탁기관(위탁이 있는 경우)의 역할, 책임 및 권한을 기록	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2.5 인증 생산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여부? ①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의 문서화 유무 ② 제조업체의 이의제기 및 요구사항 해결 방안(절차) ③ 인증 생산품의 품질관리 확인 및 관리·감독 계획	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
3. 인증업무규정(소방장비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)

3.1 인증의 신청을 위한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? ① 소방장비 인증신청 접수, 견본품 제출 ② 인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③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 등	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3.2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? ① 서류심사, 제품심사, 현장심사의 방법 · 절차 ② 인증심사 처리 기간, 보완에 대한 방법 · 절차 ③ 견본품의 반환 등	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3.3 심사결과 등에 대한 후속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? ① 심사결과 통보,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②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③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	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3.4 소방장비 인증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기준 또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? ① 서류심사, 제품심사, 현장심사 등의 수수료 기준 ② 인증수수료 외에 인증신청자가 부담할 비용 기준 ③ 수수료 산정을 위한 표준공량	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3.5 소방장비 인증업무의 일부(시험/검사)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의 관리에 관한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? ① 위탁을 받은 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정을 받은 시험 · 검사기관일 것 ② 시험 · 검사결과에의 관리에 관한 사항	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
3.6 소방장비 인증 직원의 적격성 관리에 관한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? ① 소방장비 인증 직원의 적격성(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) 유지(평가, 교육훈련 등)에 관한 사항	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3.7 기밀유지에 관한 방침 •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? ① 소방장비 인증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(개인정보 기재 서류의 관리) ② 소방장비 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비밀준수/기밀유지 서약서 운영	☐ 적합 ☐ 부적합 ☐ 개선권고

[비고] 정관(규약), 사업계획서, 인증업무규정의 평가항목은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평가함.